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	--

제안연월일 : 2025. 7. .

제안자 : 행정안전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	대표발의자	발의일자	심사경과
국립국가폭력 트라우마치유 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김한규의원 (2200081)	2024.06.03.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행정안전 위원회(24.09.02.) 상정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4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4.11.27.) 상정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5.07.08.) 상정
	정춘생의원 (2200604)	2024.06.18.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행정안전 위원회(24.09.02.) 상정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4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4.11.27.) 상정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5.07.08.) 상정
	양부남의원 (2201237)	2024.07.01.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 심사 제1소위에 직접 회부(24.11.11.)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4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4.11.27.) 상정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5.07.08.) 상정
	위성곤의원 (2204031)	2024.09.13.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 전위원회(24.11.20.) 상정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4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4.11.27.) 상정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5.07.08.) 상정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07.08.)는 이상 4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25.07.10.)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이하 치유센터)는 국립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기관운영출연금 및 사업출연금이 국비·지방비 50% 매칭 방식으로 편성되어 국립시설로서 성격에 부합하지 않고, 지방재정에 부담을 초래한다는 문제 인식에 따라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분원 대신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치유센터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고, 국가의 출연금 및 보조금,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 치유센터의 운영재원을 세분화하며,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출연·기부 방법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치유센터의 기관운영비는 전액 국비로 부담하고 사업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채택하고, “분원”이라는 표현을 “광역거점형 치유센터”로 변경하되 지역별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광역거점형 치유센터를 지역별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며, 운영재

원을 국가의 출연금 및 보조금,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보조금 및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세분화하는 한편,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출연, 기부 등에 대한 방법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분원”이라는 표현을 “광역거점형 치유센터”로 변경하되, 치유대상자의 수, 지역별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광역거점형 치유센터를 지역별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

나. 치유센터의 운영재원을 현행 국가의 출연금 및 보조금,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에서 국가의 출연금 및 보조금,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보조금 및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세분화함(안 제17조 제2호)

다.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치유센터에 대한 출연, 기부 등에 대한 방법을 명확히 함(안 제18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 부대의견

1.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기관운영비는 전액 국가가 부담하고, 사업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한다.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중 “분원”을 “광역거점형 치유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분원을”을 “광역거점형 치유센터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분원”을 “광역거점형 치유센터”로, “위탁”을 “위탁 등”으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광역거점형 치유센터는 치유대상자의 수, 이용 편의성, 지역별 및 공동체 트라우마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설립할 수 있다.

제1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보조금 및 기부금

제1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치유센터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치유센터에 돈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u>분원</u> 의 설치 등) ① 치유센터는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u>분원</u> 을 설치·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u>광역거점형 치유센터</u> 의 설치 등) ① ----- ----- --- <u>광역거점형 치유센터</u> 를--- ----- ----- ----- --.
< <u>신 설</u> >	② 제1항에 따른 <u>광역거점형 치유센터</u> 는 <u>치유대상자의 수, 이용 편의성, 지역별 및 공동체 트라우마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설립할 수 있다.</u>
② <u>분원</u> 의 설치·지정·운영 및 업무 <u>위탁</u>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u>광역거점형 치유센터</u> ----- ----- <u>위탁</u> 등--- ----- -----.
제17조(운영재원) 치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제17조(운영재원)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u>기부금</u>	2. <u>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보조금 및 기부금</u>

